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4,704,166	21,741,125
일반회계	622,040,305	18,661,209
특별회계	102,663,861	3,079,916
공기업특별회계	88,052,345	2,641,57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505,012	735,1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129,342	1,053,88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8,417,991	852,540
기타특별회계	14,611,516	438,345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346,000	40,380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04,784	42,144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48,286	100,449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396,400	11,892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3,148,210	94,446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1,839,042	55,171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5,000	750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3,103,794	93,114

제 2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449,43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3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본다.

제 7 조 (간주처리)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